

연구 자료

## 주요 FTA 대상국 농산물 관세체계 비교분석

최 세 균\*

### Keywords

관세(tariffs), FTA(free trade agreement), 종가세(ad-valorem tariffs), 종량세(specific tariffs), 복합세(compound tariffs)

###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tariff systems of 9 countries which are Korea's FTA negotiation partner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mostly HS 10 digit level tariffs schedule for each country. Many countries apply non-advalorem tariff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pply non-advalorem tariffs to 1,120 and 999 items, respectively. However, only advalorem tariff rates are utilized to calculate average tariff rates. Developing countries tend to maintain higher tariffs than developed countries. It is recommen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make a request list for the countries which maintains high tariff barriers. Non-advalorem tariffs are also strongly required to be eliminated or reduced in a transparent manner.

### 차례

- |              |         |
|--------------|---------|
| 1. 머리말       | 3. 분석결과 |
| 2. 연구 범위와 방법 | 4. 맺음말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한 이후 일본, 멕시코, 캐나다, 미국,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인도, 중국, EU 등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FTA 협상 또는 공동연구 등을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거대경제권에 속하는 아세안과 상품양허 협상을 매듭지었으며, 미국과의 FTA도 타결 단계에 있다. 그 밖에 캐나다, 인도 등과의 협상도 단기간에 매듭지어 질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국가들과의 FTA는 농업부문에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농업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본과의 협상은 장기적 추진 과제로 남게 되어 농업부문의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FTA 협상은 주로 시장개방에 초점이 맞춰지며 상품개방과 관련하여 중심을 이루는 협상 분야는 관세철폐이다. 시장개방 분야 협상은 우리나라의 협상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청(Request)과 협상 대상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요청 그리고 각각의 요청에 대한 제안(Offer)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공적인 협

상을 위해서는 협상 대상국의 관세구조를 파악하고 우리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과 고율관세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방 요청서를 작성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 상대국들의 농산물 관세 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관세철폐와 관련된 일반적인 협상전략 또는 시장개방 요청서(Request List) 작성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2. 연구 범위와 방법

분석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 대상국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아세안의 경우 분석 대상 국가가 10개국에 달하고 관세 자료 입수가 어려운 국가들(라오스, 미얀마 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농산물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태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분석하고자 하는 국가는 북미지역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미지역의 MERCOSUR, 아시아 지역의 중국, 일본, 인도, 태국, 그리고 유럽의 EU 등 모두 9개국(또는 지역)이다. 그러나 EU가 25개국, MERCOSUR가 4개국이며, 태국을 아세안의 대표적인 경우로 분석하기 때문에 위의 9개국 또는 지역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 대상국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세율 자료는 2004년 국별 관세율표를 이용하였다. WTO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관세율표는 HS 6단위 또는 8단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가별 관세율표를 입수하여 국가별로 그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표를 입력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HS 10단위 수준의 관세율표가 이용되었다. 분석은 국가별로 입력된 자료를 엑셀에 의해 제표분석이 가능하도록 평균, 분포, 품목 수, 관세율 적용 방법 등을 계산하거나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관세율은 기본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양허관세, 특혜관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FTA 협상의 양허 대상 관세는 실행관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별 실행관세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행관세를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점은 협상의 대상이 될 만큼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옥수수, 대두 등과 같이 쿼터로 수입되는 품목이 많다. 이들 품목은 쿼터 내 관세와 쿼터 밖 관세가 큰 차이를 나타낸다. 물론 쿼터 밖의 높은 관세를 물고 수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실행관세를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조정관세나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에도 조정관세나 할당관세를 실행세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품목에 해당하는 기본관세 또는 양허관세를 실행세율로 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WTO에 양허된 관세를 기준으로

국가별 관세율을 비교하였다.

평균 관세율, 관세율의 높고 낮음 등은 종가세 또는 종량세 등 어느 한 가지로 통일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별, 품목별로 통일된 관세부과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종가세 부과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국가의 경우 많은 품목이 비종가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비교에 많은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종가세로 환산된 일부 국가의 분석 결과는 최세균 외(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 3. 분석결과

#### 3.1. 평균 관세율

FTA 체결의 1차적인 목적은 교역의 증대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한다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조치의 영향이 큰 나라와 먼저 FTA를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증대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먼저 FTA를 추진해야 할 나라는 일본, 동남아 등과 같이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와 멕시코, 태국, 인도 등과 같이 관세율이 높아 관세철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국가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라 농산물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매우 높은 경우가 많아 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국 가운데 평균 관세율이 높은 국가는 인도와 태국으로 모두 40%를 넘는다. 반면 평균 관세율이 낮은 국가는 캐나다, 일본, MERCOSUR, 중국, 미국, EU 등(평균 관세율 4~16%)으로 FTA에 의한 관세철폐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제시된 평균 관세율이 종가세 부과 대상 품목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이다. 캐나다의 경우 종가세<sup>1)</sup> 부과 품목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 관세율이 4.2%에 불과하나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21.3%나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최세균 외, 2002). 특히 미국과 EU는 비종가세 부과 대상품목의 수가 각각 1,120개와 999개에 달해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비종가세 부과 품목은 중요도와 관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평균 관세율은 13.5%나 8%보다 높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이나 캐나다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1) 관세부과 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advaleorem duties),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specific duties)라고 한다. 또한, 종량세와 종가세 양자를 선택 또는 병용하는 경우 혼합세라고 한다. 혼합세에는 종량세에다 종가세를 합쳐 부과하는 복합관세와 종가세와 종량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하는 선택관세가 있다.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평균 관세율 이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관세율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수출 농산물은 주로 HS 2단위로 볼 때 신선농산물 가운데 07류(채소)와 08류(과일), 가공식품(주로 17류부터 21류)으로 볼 수 있다.

채소의 관세율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21.8%), 태국(60%), 인도(31.4%) 등이다. 과일의 관세율이 높게 나타난 국가도 채소와 유사하나 중국이 추가된다(18.0%). 가공식품 가운데 17류(당류)의 관세율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92.3%), 중국(32.2%), 태국(46.8%), 인도(47.1%) 등이다. 18류(코코아 조제품, 조제식품 등)의 관세율은 태국과 인도가 각각 45.7%와 4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멕시코와 MERCOSUR가 18% 수준이다. 19류(과스타, 곡물조제품, 빵류 등)의 경우 태국과 인도의 관세율이 50% 수준이며, 중국, 멕시코, MERCOSUR 등도 15~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류(채소 및 과일 조제품)는 태국의 관세율이 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도(31%), 멕시코(23%), 중국(21%) 등이 높다. 21류(차, 소스 등)의 관세율이 높은 국가는 인도(94%), 태국(60%), 멕시코(33%), 중국(22%) 등이다.

반면 캐나다와 미국은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캐

2) 최세균 외(2002)에 의하면 평균 관세율은 41.3%로 나타났다.

표 1. 국별 농산물 관세부과 형태별 품목분류 및 평균 관세율 현황

단위: 개, %

국가	품목수	종가세 품목수	비종가세 품목수	평균 관세율
캐나다	2,476	1,968	508	4.2
미국	2,689	1,569	1,120	13.5
멕시코	1,215	1,149	66	25.2
MERCOSUR	2,281	2,281	0	10.5
중국	1,766	1,759	7	15.9
일본	1,832	1,523	309	10.7
태국	1,065	476	589*	44.5
인도	1,513	1,409	104	43.5
EU	2,141	1,142	999	8.0

\* 선택세 457품목을 포함. 그러나 평균 관세율 등의 계산에 있어서는 종량세와 종가세 가운데 종가세를 선택하여 사용하였음.

자료: 각국의 관세율표에서 계산.

나타의 채소와 과일에 대한 관세율은 1~2%이고,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율도 10%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캐나다보다 높아 채소와 과일이 5~10% 정도이다. 미국은 땅콩과 담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HS 1202-땅콩 147.8%, HS 2403-담배 350%). 남미의 주요 4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을 나타내는 MERCOSUR는 채소와 과일에 평균 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에 대한 관세는 평균 6~20%로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채소 12%, 과일 18%, 가공식품 5~32% 등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일본의 관세율은 채소 6%, 과일 7%, 가공식품 12~20% 수준이다. 일본, 캐나다, MERCOSUR, 인도 등은 채소와 과일보다 가공품의 관세율이 높아 누진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

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FTA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는 미주지역(북미와 남미)보다 아시아지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주지역 가운데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관세율이 높은 멕시코 정도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과 인도의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 효과가 클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일본과 중국의 관세율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상당한 관세철폐 효과가 예상된다.

### 3.2. 관세율 구간별 품목분포

10% 미만의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품목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캐나다(90.2%), 미국(75.4%), EU(63.2%), 일본

표 2. 농산물 품목군별(HS 2단위) 평균 관세율 비교

단위: %

구분	캐나다	미국	멕시코	MERCO-SUR	중국	일본	태국	인도	EU
1류	0.5	0.7	16.5	2.5	6.2	0.4	18.4	30.6	2.1
2류	7.7	7.2	79.7	9.9	18.9	10.9	60.0	32.8	5.2
4류	6.0	12.4	38.8	14.8	15.7	243.2	35.8	35.2	5.3
5류	0.00	0.5	12.4	6.2	11.0	0.2	33.3	30.6	0.2
6류	2.2	3.6	15.8	4.1	7.6	0.4	60.0	18.4	5.3
7류	2.0	9.7	21.8	9.0	11.7	6.1	60.0	31.4	8.9
8류	0.7	5.5	22.5	9.9	18.0	7.1	60.0	38.8	6.9
9류	0.9	0.6	25.9	10.0	14.2	3.5	35.9	64.5	3.1
10류	11.3	2.0	49.7	8.2	33.6	1.5	n.a.	53.3	3.4
11류	3.1	3.8	20.9	10.6	27.1	17.4	44.4	37.7	11.8
12류	0.4	7.1	6.7	4.4	9.5	2.2	40.9	29.7	1.3
13류	0.00	0.6	13.7	7.4	14.1	2.8	21.1	48.9	2.2
14류	0.00	0.9	13.0	6.0	10.4	1.9	32.3	30.6	0.0
15류	5.0	5.0	22.9	9.8	19.0	3.9	31.1	80.0	6.0
16류	14.6	4.5	22.8	16.0	13.2	17.8	60.	43.0	15.6
17류	5.8	6.2	92.3	17.9	32.2	12.0	46.8	47.1	11.4
18류	4.5	5.7	18.8	18.1	12.7	18.8	45.7	46.5	6.1
19류	4.1	6.8	15.5	16.8	19.6	20.2	53.6	49.4	10.7
20류	5.3	10.7	23.3	14.0	20.5	15.9	60.0	30.8	17.5
21류	6.4	6.9	32.8	16.2	22.2	17.4	60.0	93.7	8.4
22류	4.7	1.1	28.2	20.0	27.6	6.3	53.1	70.7	0.9
23류	1.5	1.7	14.2	6.6	5.3	0.5	10.0	30.6	1.5
24류	7.1	170.3	51.3	16.0	32.3	5.1	60.0	n.a.	41.8

자료: 각국의 관세율표에서 계산.

(55.4%), MERCOSUR(31.4%) 등의 순이다. 특히 캐나다는 증가세 부과 품목을 기준으로 볼 때 5% 미만의 관세율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 1,346개(전체의 68.4%)에 달한다. 전체 품목 가운데 10% 미만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비중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선진국(캐나다, 미국, EU, 일본)이 개발도상국(MERCOSUR, 멕시코, 태국, 인도,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10% 미만의 관세율

이 적용되는 품목의 비중이 낮은 국가는 인도(2.7%), 태국(4.8%), 멕시코(11.7%) 등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적 높은 관세율로 볼 수 있는 20~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많은 국가는 인도(전체 품목의 66.9%), 태국(37.7%), 멕시코(35.6%), 중국(30.7%) 등이다. 반면 캐나다와 미국은 이 범위에 드는 품목이 전체 품목의 2.1%와 3.6% 수준

이다. MERCOSUR의 경우 이 범위에 드는 품목이 전체의 6.3%에 불과하여 비교적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MERCOSUR는 관세율 10~20% 범위에 전체 품목의 62.3%가 해당된다.

태국은 전체 품목의 51.9%인 484개 품목에 50~10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거나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은 없다. 인도는 관세율 50~100%에 속하는 품목이 211개에 달하고,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도 151개나 되어 고율관세 품목이 가장 많은 나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밖에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이 많은 나라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 등이다.

구간별 관세율 분포로 본 특징은 선진국의 경우 관세율이 높은 품목과 낮은 품목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고, 개발도상국은 중간 정도 수준(20~50%)의 관세율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보호할 품목에 대하여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확실하게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를 나타내게 하고 시장개방이 필요한 품목은 미소관세 정도만 부과하고 있다.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 산업보호 필요성이 낮은 반면 관세의 재정적 기능이 강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 국별 관세 구간별 농산물 분포

단위: 개, %

구분	0~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100% 미만	100% 이상	계
캐나다	1,775 (90.2)	141 (7.2)	42 (2.1)	4 (0.2)	6 (0.3)	1,968 (100.0)
미국	1,183 (75.4)	286 (18.2)	57 (3.6)	0 (0.0)	43 (2.8)	1,569 (100.0)
멕시코	134 (11.7)	538 (46.8)	409 (35.6)	13 (1.1)	55 (4.8)	1,149 (100.0)
MERCOSUR	716 (31.4)	1,422 (62.3)	143 (6.3)	0 (0.0)	0 (0.0)	2,281 (100.0)
중국	410 (23.3)	748 (42.5)	539 (30.7)	62 (3.5)	0 (0.0)	1,759 (100.0)
일본	843 (55.4)	299 (19.6)	376 (24.7)	5 (0.3)	0 (0.0)	1,523 (100.0)
태국	45 (4.8)	52 (5.6)	352 (37.7)	484 (51.9)	0 (0.0)	933 (100.0)
인도	38 (2.7)	66 (4.7)	943 (66.9)	211 (15.0)	151 (10.7)	1,409 (100.0)
EU	722 (63.2)	326 (28.5)	90 (7.9)	4 (0.4)	0 (0.0)	1,142 (100.0)

자료: 각국의 관세율표에서 계산.

### 3.3. 고율관세 현황

여기서는 고율관세를 100%의 이상의 관세로 정의하고 증가세 부과 대상품목에 국한하여 국가별 고율관세 현황을 분석하였다. EU, MERCOSUR, 중국, 일본, 태국은 고율관세 품목이 없다. 그러나 일본은 비종가세 부과 품목을 고려하면 쌀, 돼지고기 등 고율관세 품목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고율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6개에 불과하다. 고율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모두 육가공품(HS 16류)으로 소시지(HS 1601) 4개 품목과 조제저장육(HS 1602) 2개 품목 등이다. 최고세율은 238%로 소시지 2개 품목과 조제저장육 1개 품목에 적용된다. 그러나 캐나다가 중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비종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캐나다의 고율관세 수준은 크게 높아진다. 예를 들면, 낙농품 가운데 일부 품목(HS 0405901000 등)의 관세율은 최소 관세 수준을 종량세로 규정한 가운데 313.5%의 증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소 관세율 수준을 종량세로 규정한 상태에서 200% 이상의 증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은 낙농품(HS 04류) 가운데에서만 40개 품목에 달한다. 따라서 캐나다의 고율관세와 평균관세 수준은 증가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계산한 것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43개 품목에 대하여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고율관세 품목은 땅콩 및 땅콩 조제품, 잎담배와 담배 등이다. 그러나 미국도 비종가세 부과 품목이 많고 이들의 관세 수준이 매우 높은 점에 있어서는 캐나다와 비슷하다.

인도의 고율관세 품목은 151개로 가장 높은 관세율(206.5%) 부과 대상은 기타 조제식품류 가운데 기타의 것으로 당시럽, 인삼제품류 등 12품목이다. 주요 고율관세 품목은 커피 및 향신료(HS 09류) 49개, 동물성 유지(HS 15류) 69개, 기타 조제식품류(HS 21류) 12개, 곡물(HS 10류) 6개, 육류(HS 02류) 2개 등이다. 인도의 고율관세 품목은 대부분 가공품에 분포하고 있다.

멕시코의 가장 높은 관세율(260%) 부과 대상은 육류 가운데 가금 비계와 돼지비계(HS 0209류) 각각 1품목, 라드를 포함한 돈지 및 가금지(HS 1501)에 속하는 1품목, 우지 및 기타 동물성지(HS 151610)에 속하는 1품목 등이다. 고율관세 품목 가운데 이상의 4품목을 제외한 1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은 51개이다. 고율관세 품목은 곡물 및 곡분(HS 10류 및 15류) 7개 품목, 낙농품(HS 04류) 8개 품목, 육류(HS 02류) 24개 품목, 채소(HS 07류) 4개 품목, 기타 조제식료품(HS 21류) 4개 품목, 당류(HS 17류) 5개 품목, 동식물성 유지(HS 17류) 2개 품목 등이다. 멕시코의 고율관세 품목은 대부분 축산물과 곡물에 분포하고 있다.

### 3.4. 비종가세 현황

#### <캐나다>

관세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서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등으로 구분된다. 캐나다는 네 가지 관세 부과 형태를 모두 취하고 있다. 캐나다의 종가세 비중은 80%이다. 종량세는 비종가세 품목 가운데 가장 흔한 형태로 모두 248개 품목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종량세 부과 품목이 가장 많은 것은 치즈(HS 0406)와 포도주(HS 2204)에 속하는 품목으로 각각 44개 품목이다. 그밖에 과일 및 곡물 발효주(HS 2206)에 속하는 품목 가운데 30개 품목에 대하여 종량세가 부과되고 있어 주류에 대하여는 종량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종량세 부가가 많은 품목군은 사탕수수당(HS 1701)과 포도당(HS 1702)으로 여기에 속하는 품목은 각각 16개와 12개이다.

선택세는 모두 17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선택세도 축산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육류(HS 02류) 가운데 22개 품목에 선택세가 적용되며, 이 가운데 16개 품목은 가금육이다. 낙농품(HS 04류) 가운데 40개 품목에 선택세가 적용되며 주로 치즈(HS 0406)가 이에 해당한다(17개 품목). 서류와 채소(HS 07류) 가운데에서는 48개 품목이 선택세 부과 대상이다. 채소류 가운데 선택세 부과 품목이 많은 것은 버섯으로 12개 품목이다. 과일류(HS 08류)에 대하여는 모두 20개 품목에 선택

세가 적용된다.

복합세 부과 대상 품목은 모두 63개이다. 복합세 부과 품목이 가장 많은 것은 곡물조제품(HS 19류)이다. 곡물조제품 가운데 43개 품목이 복합세 부과대상으로 모든 복합세 부과 대상품목의 68%에 달한다. 그밖에 가금육 등에 부과되는 특수 형태의 비종가세가 있다. 특수 형태의 비종가세 부과 품목은 21개이며, 이 가운데 가금육(HS 0207)이 15개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캐나다의 비종가세 현황

구분	품목수
종량세	248
선택세	187
복합세	73
합계	508

자료: Canada, Customs Tariff, 2004.

#### <멕시코>

멕시코는 네 가지 관세 부과 형태 가운데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등 3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부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거나 멕시코의 종가세에 특별세를 더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여기서도 복합세로 취급하였다. 특별세는 물품별로 세법이 정하는 세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내역은 관세율표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 멕시코는 이러한 형태의 복합세를 모두 42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복합세 적용 대상 품목

은 신선 농산물에 속하는 것으로 낙농품 6개 품목, 과일 3개 품목이 있으며, 42개 품목 가운데 나머지 품목은 주로 HS 2단위로 17류에서 22류에 속하는 가공식품이다.

종량세 부과 품목은 HS 2단위로 16류(육류 조제품) 2품목, 17류(당류) 13품목, 18류와 21류(기타 조제식료품) 각각 1품목이 있다. 이 가운데 종량세 부과 품목이 가장 많은 것은 HS 1701(사탕수수당)에 속하는 것으로 12개 품목이 있다. 종량세 부과 대상 품목 가운데 멕시코 통화로 표시된 것은 2개 품목(HS 16류 품목)이고 나머지는 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다. 수입금지 품목은 모두 7개로 HS 1208류(대두 종자 및 분), HS 1209류(일부 채소 종자), HS 1211(향료, 의료용 식물 등), HS 4103(원피) 등이 각각 1품목, HS 1302(천연견, 수지)가 3품목이다.

<미국>

미국은 비종가세로 종량세와 복합세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세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특수 형태의 관세로 세율에 일정한 범위를 설정한 예가 있다. 미국의 비종가세 부과 품목은 1,120개로 이 가운데 종량세가 대부분이며(972 품목), 복합관세(138 품목)와 일정한 범위를 정한 특수한 형태의 관세(10 품목)가 운용되고 있다. 종량세 부과 품목이 많은 것은 낙농품, 과일, 곡물, 조제채소, 담배 등이다. 복합세 적용 품목은 주로 낙농품, 코코아 조제품, 조제식품, 파스타, 곡물조제

품, 차와 소스, 담배 등이다. 일정한 범위의 관세율을 규정한 품목은 10개이며, 모두 17류(당류)에 속하는 품목이다.

표 5. 미국의 비종가세 현황

구 분	품목수
종량세	972
복합관세	138
특수관세(범위관세)	10
합 계	1,120

자료: U.S. Tariff Schedule 2004.

<태국>

태국은 비종가세 가운데 종량세와 선택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단순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종량세 부과 품목은 132개이며, 선택세 부과 품목은 459개 이다. 선택세의 경우 관세가 높은 쪽을 적용하게 된다. 곡물류(HS 10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종량세가 적용된다. 종량세 부과 품목은 곡물, 식물성유, 주류 등이다. 선택세는 주로 채소, 과일, 과일 및 채소 조제품, 식물성유, 주류, 담배 등에 부과되나 매우 광범위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일본>

일본은 종가세 이외에 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기타 특수 형태의 관세 등 다양한 비종가세를 운용하고 있다. 종량세는 부과 대상 품목이 170개이며, 축산물, 과일, 곡물, 가공식품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

다. 복합세는 58개 품목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 품목은 주로 낙농품, 차와 소스 등이다. 선택세는 51개 품목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 품목은 주로 당류, 조제 채소 및 과일 등이다. 특수 형태의 관세는 계절관세, 차액관세, 면세 등을 포괄하며, 여기에는 30개 품목이 해당된다.

<인도>

인도의 비종가세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종량세 2품목, 복합세 102 품목이 해당된다. 종량세 품목은 견과류(HS 0802)에 국한되어 있으며, 복합세는 주류(HS 22류)와 담배(HS 24류)에 주로 부과된다. 복

표 6. 일본의 비종가세 현황

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기타	
0101류	2	1501류	1	0401류	4	0408류	2	0103류	1
0102류	2	1507류	3	0402류	12	1005류	2	0203류	6
0103류	1	1508류	3	0403류	7	1513류	2	0206류	2
0203류	6	1512류	8	0404류	12	1515류	2	0210류	4
0206류	2	1514류	6	0405류	5	1702류	17	0703류	1
0210류	2	1515류	9	1806류	2	2009류	15	0803류	1
0402류	4	1517류	1	1901류	6	2106류	3	0805류	1
0712류	1	1701류	6	2101류	4	2204류	3	0806류	1
0713류	7	1702류	2	2106류	4	2206류	1	0812류	3
1001류	4	1703류	4	2309류	2	2208류	1	1512류	2
1003류	2	1901류	12		58	3505류	2	1602류	3
1005류	1	1902류	7			3809류	1	5002류	5
1006류	4	1904류	10						
1008류	1	2008류	4						
1101류	1	2106류	4						
1102류	3	2204류	4						
1103류	8	2205류	2						
1104류	9	2206류	3						
1107류	4	2207류	2						
1108류	7	2208류	3						
1202류	2	2309류	2						
1212류	1								
계	74		96		58		51		30
총계	170				58		51		30

자료: Japan, Customs Tariff, 2004.

합세는 크게 기본관세에 각주(또는 종량세)에 해당하는 관세를 더하고 다시 교육세를 더하는 형태와 교육세가 면제된 형태로 구분된다(Basic Duty+Note+Education Cess, 또는 Basic Duty+note 또는 Basic Duty+종량세+Education Cess).

#### <중국>

중국의 비종가세 품목은 7개로 닭고기(HS 0207) 5품목과 동물의 장(HS 0504) 등이다. 따라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 가운데 관세부과 형태가 가장 단순한 국가에 속한다.

#### <EU>

EU는 종가세, 종량세, 복합세 등 3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복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부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EU의 경우 복합세를 일반 복합세와 특수 복합세로 세분화 하였다. 일반 복합세 적용 대상 품목은 신선 농·축산물과 조제품에 속하는 것으로 축산물 47개 품목, 낙농품 12개 품목이 있으며, 211개 품목 가운데 나머지 품목은 주로 HS2단위로 17류에서 22류에 속하는 가공식품이다. 특수 복합세 적용 대상은 대부분 HS2단위로 17류에서 19류에 속하는 가공식품이다.

종량세 부과 품목은 HS2단위로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고 있다. 이 가운데 종량세 부과 품목이 가장 많은 것은

HS2204(포도주 및 포도즙)에 속하는 것으로 93개 품목이 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HS0207(가금육)에 속하는 것으로 82개 품목이 있다.

#### 4. 맺음말

우리나라 농업부문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FTA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수입 증가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 대상국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소극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FTA 상대국 관세율 분석 결과와 우리나라 농업부문 입장에서 본 FTA 대상국 선호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FTA로 우리 시장만 개방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국 시장도 개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FTA 대상국 선정과 협상에 있어서 수출 가능성이라는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개방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인도, 멕시코, 태국 등 관세가 높은 국가들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세철폐 요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관세철폐 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비종가세 부분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은 비종

표 7. EU의 비증가세 현황

단위: 개

종량세				복합세			
				일반복합세		특수복합세	
0103	3	0701	1	0102	11	1704	13
0104	3	0702	1	0201	6	1806	16
0105	13	0704	2	0202	8	1905	14
0203	16	0705	1	0204	27	2009	3
0207	82	0706	2	0206	2	2105	3
0209	4	0707	1	0210	4	3505	4
0210	20	0708	2	0403	12	3809	4
0401	12	0709	5	0703	1		
0402	28	0711	1	0710	1		
0403	18	0712	2	0711	2		
0404	30	0714	8	0811	4		
0405	10	0802	4	1517	2		
0406	48	0803	1	1702	1		
0407	3	0804	1	1806	4		
0408	4	0805	11	1901	5		
0603	6	0806	2	1902	9		
0808	6	2008	1	1903	1		
0809	6	2009	5	1904	10		
0810	2	2106	5	1905	9		
1001	3	2204	93	2001	2		
1002	1	2205	4	2003	2		
1003	2	2206	7	2004	2		
1004	1	2207	2	2005	2		
1005	2	2208	6	2006	3		
1006	33	2209	4	2007	10		
1007	1	2302	8	2008	19		
1008	4	2303	1	2009	29		
1101	3	2306	1	2101	4		
1102	7	2307	1	2102	2		
1103	16	2308	1	2106	3		
1104	37	2309	20	2202	3		
1106	2	2401	21	2905	5		
1107	5	3301	2	3505	2		
1108	6	3502	4	3824	4		
1109	1	1601	2				
1212	3	1602	13				
1501	1	1605	4				
1504	1	1701	7				
1509	3	1702	21				
1510	2	1703	2				
1522	2	1902	1				
계			731	계	211	계	57

자료: EU, Customs Tariff, 2004.

가세 부과 비중이 높고 비종가세는 종가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종가세의 철폐 또는 종가세로의 전환 후 감축(또는 철폐) 문제는 FTA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협상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의 비종가세는 적용되는 품목 수가 많은 것은 물론 그 형태가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일본과 멕시코의 FTA 협상에서 일본의 돼지고기에 대한 차액관세 철폐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U도 FTA 협상에서 복합세 품목의 경우 종가세 부분만 철폐(또는 감축)하고 종량세는 존치한 경우가 많다.

#### 참고 문헌

- 임정빈. 2000. “차기 WTO 농산물 관세 인하 협상과 정책과제.” 「농업경제연구」. 제 41집 제 2권. 한국농업경제학회.
- 최세균, 임송수, 어명근. 2002.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 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 연구보고 R4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고 접수일: 2006년 9월 17일

원고 심사일: 2006년 10월 30일

심사 완료일: 2006년 11월 9일

부표 1. 캐나다의 품목류별 비종가세 현황

단위 :개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특수선택세		보통선택세		특수복합세		보통복합세	
0105류	8	0207류	15	0105류	4	0703류	1	0706류	1
0402류	5	0209류	2	0207류	16	0704류	3	1102류	1
0403류	2	0210류	2	0209류	2	0705류	2	1103류	3
0404류	2	1602류	2	0210류	4	0706류	1	1104류	5
0405류	1			0401류	3	0708류	1	1109류	1
0406류	44			0402류	7	0709류	2	1901류	7
0407류	3			0403류	3			1902류	8
0408류	7			0404류	5			1904류	14
0604류	1			0405류	3			1905류	14
0701류	1			0406류	17			2106류	1
0706류	1			0407류	2			2204류	6
0805류	1			0701류	1			2302류	2
0910류	1			0702류	6				
1001류	4			0703류	4				
1002류	1			0704류	5				
1003류	2			0705류	2				
1008류	1			0706류	5				
1101류	1			0707류	2				
1102류	1			0708류	3				
1103류	1			0709류	10				
1106류	1			0808류	3				
1107류	6			0809류	10				
1108류	11			0810류	2				
1517류	1			0811류	2				
1601류	3			0812류	3				
1701류	16			1517류	1				
1702류	12			1602류	9				
1902류	3			1806류	2				
1905류	2			1901류	11				
2106류	2			2009류	7				
2202류	2			2105류	3				
2203류	1			2106류	3				
2204류	44			2202류	1				
2205류	5			2309류	5				
2206류	30								
2207류	4								
2208류	11								
2240류	1								
2302류	2								
3502류	3								
계	248	계	21	계	166	계	10	계	63

주: 특수선택세와 특수복합세는 관세율표에서 'x% but not less than y cent/kg or more than z cent/kg'와 'x cent/kg but not less than y% plus z%'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된 품목임.

자료: Canada, Customs Tariff, 2004.